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114197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591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114197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6. 5. 12.

판결 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9. 22.까지는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연길 소재 C 유한공사 대표이사 D는 2011.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 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인을 날인해 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법인 중국 연길 C유한공사(대표이사 D)는 현금 2억 원을 개인 A에게 차입하고 6개월 후 (2011년 10월 16.일)에 2억을 상환하기로 한다. 첫째: 차용하는 조건으로 중국연길 C 유한공사의 도메인(E)을 담보로 한다. 둘째: 도메인(E)이 50억 이상에 매도 확정되는 경우 현금 4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원고는 2011. 4. 11. D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4. 29. D가 지정한 D의 모 F 명의의 계좌로 173,6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의 확정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소외 회사의 도메인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는 소외 회사라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가 D 개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연대보증계약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게 소외 회사의 차용금 193,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5.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1. 4. 20.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현금 7,000,000원을 교부하여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는 중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으로 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의 계약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국의 계약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여자인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10.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연대보증 해줄 테니 돈을 빌려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차용금도 한국 소재 금융기관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한국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D, F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중국법인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준거법은 한국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국의 계약법 규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차용인은 소외 회사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하지 않고 D 개인에게 보냈으므로, 소외 회사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또한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계좌 또는 D가 지정하는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는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이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